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동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29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0.

발 의 자: 장동혁 · 김도읍 · 김소희

박정하 • 박덕흠 • 서범수

김상훈 • 인요한 • 곽규택

조배숙 • 이인선 • 백종헌

정점식 • 김 건 • 이성권

신성범 • 유상범 의원

(17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정보원은 오랜 기간 대공수사를 전담해 왔으나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따라 국내 대공수사 역량은 현격히 저하되고, 수십년간 축적되어 온 국정원의 수사경험 등이 그대로 사장되는 등 심각한 안보공백이 우려되고 있음.

따라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을 지켜 내려는 것임(안 제43조 및 제44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730호) 및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73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사람

제4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43조제5호에 규정된 사람: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제3호 의2에 규정된 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사에 관한 적용례) 제43조제5호 및 제4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「형법」중 내란의 죄, 외환의 죄, 「군 형법」중 반란의 죄, 암호 부정사용의 죄, 「군사기밀 보호법」에 규정된 죄, 「국가보안법」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3조(군사법경찰관) 다음 각 호	제43조(군사법경찰관)	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		
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			
수사한다.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5.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		
	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		
	지명하는 사람		
제44조(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)	제44조(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)		
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			
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			
따라 수사한다.			
1. ·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4. 제43조제5호에 규정된 사람:		
	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		
	제3호의2에 규정된 죄		